

문서번호	임대개발팀-53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4.25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임대사업본부장
		04/25
정준환	정준태	강민규
협 조	팀장 팀장 팀장 차장	강성수 임영규 이니세 설윤철
감 사		

가락몰 지하1층 내연오토바이 운행제한 계획

2017.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임대개발팀

가락물 지하1층 내연오토바이 운행제한 계획

가락물 지하1층 청과직판 구역 내 임대상인의 주요 물류수단인 내연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공기질 저하 및 영업환경악화 문제 개선안 마련

I 추진근거

- 임대개발팀-436(2017.4.3.) 「가락물 청과직판 활성화 관련 소통회의 (5차)」
- 2017년도 임대개발팀 업무추진계획 「4. 가락물 상환경 개선」

II 물류기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청과직판 물류기기 보유 현황

- 1차) 청과직판 물류기기 보유 현황 자체 조사(임대개발팀, 4.18.)
 - 5종 총 325대 운용 : 판매장 214대, 주차장 111대 비치
 - 전동식은 187대, 내연기관 동력식은 138대임

구분	계	소계	내연식			소계	전동식	
			내연이륜 오토바이	내연 삼륜차	지게차		전기 삼륜차	전동차
판매장	214	96	83	6	7	118	103	15
주차장	111	42	33	5	4	69	39	30
계	325	138	116	11	11	187	142	45

※ 지게차 일부 수량은 전동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연식으로 우선 분류

- 2차) 점포 운영 및 영업실태 조사(4월) : 시행중

- 유통인 단체 위탁 조사 후 관련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총수 관리

□ 문제점

- 부서 자체 조사 결과 전동식 물류기기가 상당수 보급되었으나 (57%), 현재까지 내연이륜 및 내연삼륜차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기질 저하에 따른 유통인 영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내연운송수단의 운행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통인이 공감하고 있으나, 판매장내 임대유통인을 포함하여 외부 배달 식당 및 도매권역 청과동 차량이 혼재되어 출입관리가 어려움
- 도매권역과 구분하여 가락물 판매장 전용물류기기에 대한 총수 관리 필요

Ⅲ 추진 방향

□ 청과직판 임대상인이 보유한 내연식차량의 판매장 내 운행 금지 및 주차장 이전

- 가락물 청과직판 유통인 대상 홍보 및 계도 실시
 - 유통인 개별 문서 통보, 판매장 주출입구(3개소) 바닥 대형 홍보 스티커 부착 ... 완료
 - 판매장 내 내연차량 이용 유통인 단속 안내 공문 시행(5.1일 이후 출입 금지)
- 유통인·공사 합동 캠페인 실시 : 공사 10명(임대사업본부), 유통인 5명
 - 1차 : 2017.4.28(금), 9시
 - 내연식 운송수단 판매동내 운행 금지 및 주차장내 이전안내
 - '17년 정부 전기삼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 판매장 내 내연차량 운행자 행정처분 예고 등 전단지 배포
 - 입간판 설치 : 물류대기장 3개소 내 각 2개, 총 6개
 - 2차 : 2017.5.12(금), 9시
 - 판매장 내 내연식 운송수단 주차적발 시 금지 스티커 부착
 - 판매장 내 내연차량 입출입 통제 및 계도

- 판매장 내 내연차량 운행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상 : 가락몰유통인조합, 가락몰종합유통협의회 2개소 개별
 - 내용 : 내연차량 주차장으로 이전 등 운영 세부 내용
- 임대상인 평가제 도입시 위반자 감점 지표 반영 : 임대관리팀 협조
 -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유통인 신 평가체계 구축(하반기 예정)
-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유통인 단속 및 행정처분
 - 단속 방법
 - 공사·유통인 합동 단속 : 5~6월 월 2회 주간(공사는 당일 야간 근무 인력 활용)
 - 전담인력 6명 단속 : 5월 이후 상시(야간)
 - 처분내용 : 1차 시정지시, 2차 경고, 3차 시설사용제한 5일

□ 가락몰 외부 내연차량의 판매장 내 출입 금지

- 단속요원 운용 : 6명(가락몰종합유통협의회 채용 중)
 - 시행일자 : 2017.5.1. 이후 예정으로 필요시 별도 조정
 - 근무시간 : 야간 20시 ~ 익일 06시
 - 업무범위
 - 판매장과 주차장 경계구역인 물류대기장 3개소 내 각 2인 배치
 - 배달 식당 및 도매권역 내연차량 판매장내 진입 통제, 대기장내 상품 하역 유도(카트 비치)
 - 외부반입 제재 거부자 확인 및 관련 임대유통인 계도
 - 근무자의 기타 업무범위에 대해 유통인단체와 협의 후 별도 지정
- 도매권역 물류기기 출입금지 홍보 및 계도
 - 청과부류 중도매인 대상 홍보 : 농산팀 협조
 - 내연차량 판매장 진입 금지, 가락몰 배송 시 전동차량 활용 유도

- 안내전단배포 및 관련내용 도매권역 청과동 안내방송 실시
- 지하연결통로로 진입하는 도매권역 내연배송차량 계도 : 시장개선팀 협조
- 가락몰 주변 질서관리 및 순찰 인력 활용

가락몰과 도매권역 물류기기 구분 관리

- 가락몰 전용 내연차량 구분 스티커 부착
 - 유통인 단체 자체 시행 : 가락몰종합유통협의회(협의완료)
- 물류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청과직판 운행자 야광조끼 지급 착용
 - 「점포 운영 및 영업실태 조사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가락몰 청과직판 전체 물류기기 운행자 개별 지급 : 300벌 기 보유

Ⅲ 행정 사항

내연오토바이 운행제한 업무협약 체결 : 가락몰 청과직판 유통인단체 2개소

※ 단속전담인력 수행 업무범위 별도조정 : 가락몰종합유통협의회

판매장 내 도매권역 물류기기 출입 제재 홍보 및 계도 : 농산팀, 시장개선팀

임대상인평가제 반영 : 임대관리팀

판매장 내 내연오토바이 운행 제한 위반 임대유통인 단속 : 임대사업본부

- 붙 임
1. 임대유통인처분 기준 및 계약 내용.
 2. 업무협약서.
 3. 내연차량운행금지 안내문. 끝.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위반자 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위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일 위반행위로 처분을 최근 1년간 3번 이상 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규정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6.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주자 준수사항 중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 시)	제33조	시정지시 (경고)	경고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5일 (시설사용제한 1개월)

가락물 임대차 계약서

제16조(임차인의 준수 의무) ① 임차인 또는 그 종업원은 위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상행위에 관련되는 제 법규, 시장 운영을 위해 적용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4. 기타 집단행동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배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가락몰 B1 청과직판 내연차량 운행제한 업무협약

공사와 가락몰 청과직판 입주 유통인은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내연차량 운행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장 유통인과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한다.

- 제1조 공사와 청과직판 유통인들은 가락몰 B1 구역의 영업환경 개선 노력을 함께 한다.
- 제2조 가락몰 B1의 내연차량 운행구역은 B1 주차장으로 한정하며 판매장 내에서는 전동차량만을 운행하는데 합의한다.
- 제3조 현재 유통인들이 보유중인 내연차량은 전동식으로 적극 교체하고, 미 교체 차량은 주차장으로 이전한다.
- 제4조 도매권역 또는 외부 식당에서 내연차량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가락몰 B1 판매장과 주차장의 경계구역인 대기장내 하역을 유도하고, 전동 또는 수동의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판매장으로 이송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 제5조 판매장 내에서 내연차량을 이용하는 유통인은 단속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임대상인 종합평가 감점 등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 공사는 판매장의 영업환경이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상기 내용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시행하는데 합의하며, 전체 입주민들이 상기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참여한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가락몰유통인조합

조합장

박영태

가락몰 B1 청과직판 내연차량 운행제한 업무협약

공사와 가락몰 청과직판 입주 유통인은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내연차량 운행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장 유통인과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조 공사와 청과직판 유통인들은 가락몰 B1 구역의 영업환경 개선 노력을 함께 한다.

제2조 가락몰 B1의 내연차량 운행구역은 B1 주차장으로 한정하며 판매장 내에서는 전동차량만을 운행하는데 합의한다.

제3조 현재 유통인들이 보유중인 내연차량은 전동식으로 적극 교체하고, 미 교체 차량은 주차장으로 이전한다.

제4조 도매권역 또는 외부 식당에서 내연차량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가락몰 B1 판매장과 주차장의 경계구역인 대기장내 하역을 유도하고, 전동 또는 수동의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판매장으로 이송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제5조 판매장 내에서 내연차량을 이용하는 유통인은 단속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임대상인 종합평가 감점 등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공사는 판매장의 영업환경이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상기 내용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시행하는데 합의하며, 전체 입주민들이 상기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참여한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가락몰종합유통협의회 회장 문성종

가락몰 청과직판 판매장 내 오토바이등 내연차량 운행제한

- 쾌적한 가락몰을 위해 유통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가락몰(B1) 판매장 내 내연식오토바이 운행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소음 및 배기가스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판매장 내에서는 내연식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며 현재 판매장 내 주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주차장으로 이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5월 1일(월) 이후 판매장 내 운행되는 내연식 오토바이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정비 및 관련 유통인 행정처분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가락몰 유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